

▶ 투자대상 상위 10종목

(단위 : %)

구분	종목명	비중	구분	종목명	비중
1	집합투자증권 이지스(자)채권(C/CV)	45.45	6		
2	집합투자증권 TIGER 200	44.47	7		
3	단기상품 CMA (신한금융투자)	7.42	8		
4	단기상품 은대(우리은행)	2.66	9		
5			10		

■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

▶ 집합투자증권

(단위 : 최수, 백만원, %)

종목명	종류	자산운용사	설정원본	순자산금액	발행국가	통화	비중
이지스(자)채권(C/CV)	채권형	우리글로벌자산운용	180	184	대한민국	KRW	45.45
TIGER 200	수익증권	미래에셋자산운용	184	180	대한민국	KRW	44.47

※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

▶ 단기대출 및 예금

(단위 : 주, 백만원, %)

종류	금융기관	취득일자	금액	금리	만기일	발행국가	통화
CMA	신한금융투자	2020-06-30	30	0.40	2020-07-01	대한민국	KRW
예금	우리은행	2010-04-01	11	0.23		대한민국	KRW

※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

4.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

▶ 투자운용인력(펀드매니저)

(단위: 개, 백만원)

성명	직위	나이	운용중인 펀드 현황		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		협회등록번호
			펀드개수	운용규모	펀드개수	운용규모	
최미영	부사장	41	78	2,459,419	-	-	2119000125
김태현	과장	37	78	2,459,419	-	-	2119000109
최명혁	사원	28	78	2,459,419	-	-	2119000110

※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, '책임투자운용인력'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.

※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 (인터넷 주소 <http://dis.kofia.or.kr>) 단,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
▶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

기간	운용전문인력
2019.01.25 ~ 현재	최미영
2019.01.24 ~ 현재	김태현
2019.01.24 ~ 현재	최명혁
2018.05.29 ~ 2019.12.06	차인식

5. 비용 현황

▶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전기		당기		
	금액	비율	금액	비율	
자산운용사	0	0.02	0	0.02	
판매회사	0	0.11	0	0.11	
펀드재산보관회사(신탁업자)	0	0.00	0	0.00	
일반사무관리회사	0	0.00	0	0.00	
보수합계	1	0.15	1	0.15	
기타비용	0	0.00	0	0.00	
매매·중개수수료	단순매매·중개수수료	0	0.00	0	0.00
	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	0	0.00	0	0.00
	합계	0	0.00	0	0.00
증권거래세	0	0.00	0	0.00	

※ 펀드의 순자산총액(기간평균)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.

※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,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·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·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.

※ 성과보수내역 : 해당 없음

※ 발행분담금내역 : 해당 없음

▶ 총보수, 비용비율

(단위 : 연환산, %)

	총보수·비용비율(A)	매매·중개수수료 비율(B)	합계(A+B)
전기	0.5894	0.0095	0.5989
당기	0.5894	0.0104	0.5998

※ 총보수비용비율(Total Expense Ratio)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'보수'와 '기타비용'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(보수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.

※ 매매·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·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(보수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·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.

'코리아인덱스(INDEX VA)' 외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(50억원 미만)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법적당사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)